

의안 번호	386
----------	-----

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11 .21.

전문위원 강영숙

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소형준 의원 외 12인

나. 의안번호 : 제386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06.

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5.

2. 제안이유

- 고령, 장애, 정신적·신체적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·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를 준비할 시기에 가족돌봄의 부담을 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통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안의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계획 수립(안 제4조~제5조)
- 다. 실태조사 등, 지원사업, 업무의 위탁 등(안 제6조~제8조)
- 라. 협력체계 구축, 홍보 및 교육, 중복지원의 제한(안 제9조~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기본법」, 「청소년기본법」, 「청년기본법」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4. 11. 08. ~ 2024. 11. 12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조례안은 고령, 장애,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 및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안 제2조(정의)

- “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”이란 고령, 장애,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「민법」 제779조¹⁾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이상 39세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함.

※ 청소년기본법(청소년) 9세이상~24세이하, 청년기본법(청년) 19세이상~34세이하,
성북구 청년지원기본조례(청년) 19세~39세이하

나. 안 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) 및 제6조(실태조사 등)

-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다. 안 제7조(지원사업) 및 제8조(업무의 위탁)

-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, 주거, 상담 및 심리·정서 안정, 직업훈련 및 취업, 의료 등 맞춤형 지원사업 과 해당 분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라. 안 제9조(협력체계 구축), 제10조(홍보 및 교육)

-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1) 「민법」 제779조제779조(가족의 범위)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
2.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.[전문개정 2005. 3. 31.]

마. 안 제11조(중복지원의 제한)

-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□ 종합의견

- 본 제정안은 『청소년기본법』 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및 『청년기본법』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육성 및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『사회보장기본법』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²⁾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.
- 보건복지부 2023년 4월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구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본 안건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상위법과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2)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조(정의) 1호 “사회보장”이란 출산, 양육, 실업, 노령, 장애, 질병,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·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, 공공부조, 사회서비스를 말한다

《 참 고 》

- 보건복지부가 2023년 4월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.6시간, 평균 돌봄기간은 46.1개월로 삶에 대한 불만족도가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,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됨.
- 필요한 복지 서비스는 생계 · 의료 · 휴식 지원 · 문화·여가 순으로 응답하였으며, 돌봄 부담이 높을수록 문화·여가보다 심리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발굴 강화, 상담·안내 활성화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의 미래를 포기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강조
- 지자체에 청년복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가족돌봄 청년이 복지제도에 대해 원스톱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힘.

○ 『청소년기본법』 [시행 2024. 3. 26.] [법률 제20420호, 2024. 3. 26., 일부개정]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○ 『청년기본법』 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53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,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·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3. 21.>

○ 「사회보장기본법」 [시행 2021. 12. 9.] [법률 제18215호, 2021. 6. 8., 일부개정]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·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